



## 해외건설협회의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우리나라 물류 및 해외건설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, 양 기관은 신의 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### 제 1 조 (업무협력의 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건설업과 물류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
2. 전략적 해외 거점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
3.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사단 및 사절단 파견을 위한 상호 협력
4. 해외건설 및 물류 관련 정보의 교환과 세미나, 설명회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
5. 해외건설 및 물류 관련 국내외 제도와 정책, 진출전략, 금융 등의 정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
6.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협력 활동

### 제 2 조 (업무분장 및 예산집행)

상기 제1조의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업무분장과 예산분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### 제 3 조 (정보교류)

양 기관은 해외건설 및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 이미 수행하였거나, 수행 중인 각종 연구, 교육 및 시장동향 관련 정보의 교류에 상호 협력한다.

**제 4 조 (권리 · 의무의 승계)**

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 · 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

**제 6 조 (신의성실)**

양 기관은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
**제 7 조 (협약의 해석 등)**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협회의 합의에 따라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
**제 8 조 (효력 및 유효기간)**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정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9년 10월 26일

해 외 건 설 협 회  
회 장 이 재 군

이 재 군

한 국 통 합 물 류 협 회  
회 장 김 진 일

김 진 일